천·년·의·비·상
전 라 북 도

도 보

www.jeonbuk.go.kr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 장

제2452호 2014. 10. 31 (금)

조 례

○ 전라북도조례제3894호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 1
○ 전라북도조례제3895호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 6
○ 전라북도조례제3896호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8
○ 전라북도조례제3897호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10
○ 전라북도조례제3898호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11
○ 전라북도조례제3899호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폐지조례 ····· 13
○ 전라북도조례제3900호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폐지조례 ····· 14
○ 전라북도조례제3901호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 15
○ 전라북도조례제3902호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20
○ 전라북도조례제3903호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22
○ 전라북도조례제3904호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24
○ 전라북도조례제3905호 전라북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26
○ 전라북도조례제3906호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 27
○ 전라북도조례제3907호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 29
○ 전라북도조례제3908호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31
○ 전라북도조례제3909호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검정·시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32
○ 전라북도조례제3910호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34
○ 전라북도조례제3911호 전라북도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 ····· 35
○ 전라북도조례제3912호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43
○ 전라북도조례제3913호 전라북도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 ····· 44
○ 전라북도조례제3914호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45

이면계속

회람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과 ☎(063)280-2182, 280-2188)
(560-761)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고 시

○ 전라북도고시제2014-262호 해망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46
○ 전라북도고시제2014-263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 49
○ 전라북도고시제2014-264호 정읍시고부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인가고시 ····· 50
○ 전라북도고시제2014-265호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지정및지형도면고시 ····· 52

공 고

○ 전라북도공고제2014-102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57
○ 전라북도공고제2014-1023호 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 58
○ 전라북도공고제2014-1025호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 59
○ 전라북도공고제2014-102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60
○ 전라북도공고제2014-1028호 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공고 ····· 61
○ 전라북도남원의료원원장추천위원회공고제2014-1034호 전라북도남원의료원원장후보자모집공고 ····· 62
○ 전라북도익산소방서공고제2014-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행정처분사항공고 ····· 71
○ 전북고창소방서공고제2014-01호 소방시설업등록공고 ····· 72

휘 보

○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10-65 위탁업무관리철저 ····· 73
○ 전라북도지시사항제2014-10-66 건의사항관리전담부서업무분장 ····· 73

시 군 행 정

○ 전주시공고제2014-1265호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공고 ····· 74
○ 군산시공고제2014-1578호 군산시제2차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공청회개최취소공고 ····· 75
○ 정읍시고시제2014- 93호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76
○ 정읍시고시제2014- 94호 정읍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77
○ 정읍시공고제2014-1104호 정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 79
○ 김제시고시제2014- 112호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결정및지형도면고시 ····· 81
○ 순창군고시제2014- 84호 순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82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894호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2. “주민참여 예산제”란 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정기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살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제출한 사항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살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국장)
4.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4장 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

제18조(예산연구회 운영)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895호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배상 금액 1억원”을 “배상금액 1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배상금액 10억원”을 “배상금액 10억 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1회에”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에서「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 평생교육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896호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어장정화선 수수료”를“어장정화선 사용료”로 하고,“전라북도 수입증지”를“전라북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장정화 사용료 부과기준

구 분	부과기준	사 용 료
해조류 어장	1ha	정화사업 설계단가 (어장경운, 및 오폐물 수거·인양비)
패류· 마을어장	〃	〃
수하식 어장	〃	〃
해상가두리 양식어장	〃	〃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897호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연수원”을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1”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존 위탁운영단체는 이 조례 개정 전 당시 계약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경과시 필요한 경우 연장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898호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의"를 "제63조에 따른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로, "사항과 법"을 "사항과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분쟁위원회"를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를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위원장과위원”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발생시 동”을 “발생시 같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라북도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및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899호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폐지조례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0호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폐지조례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1호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전라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라북도의 규정에 따라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는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12조(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2. 제8조・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분석·평가지원 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2호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종합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를 “따라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 중 “복지관”을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종합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장애인 행사”를 “장애인 행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이용케할”을 “이용하게 할”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최초위탁시”를 “최초위탁 시”로, “자(이하“수탁자””를 “자(이하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인정한다.”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도 지사”를 “도지사”로, “수탁자 에게”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노력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부채납 하여야”를 “기부채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준수하여 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정하여야할”을 “시정하여야 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운영”을 “복지관 운영”으로 한다.

제11조 “자체운영 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 영”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체운영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3호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전라북도”로 하고, “허가할때는”을 “허가할 때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을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하 ”매점“이라 한다)”으로 하고,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사전공고하여야”를 “설치되는 매점의 판매 품목은 사전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를 “매점이나”로 하고,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하여”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로, “경합시”는 “각 호별 경합 시”로 하며, 제2항 제1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4호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2의 규정”을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역정신보건센터”라 함은”을 ““광역정신보건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함은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을 ““정신질환자”란「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으로, “비 정신병적”을 “비정신병적”으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실비변상조례』”를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4조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만료 시 도지사에게 반환 하여야”를 “만료시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를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5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저주거기준”이라 함은「주택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최저주거기준”이란「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소득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가구“라 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를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집공고 시”를 “모집공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촌지역인 8개 군 지역은 해당 군에서 기존 입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해당 년도”를 “해당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6호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제1항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2조의2제1항”을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 법률 시행령」제50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조”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영 제19조제2항제1호3”을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3”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 에관한운영규정」”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7호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인 이내로 구성 하며,신재생에너지”를 “남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8호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09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연구원”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원장”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의약품 원거리 검정·시험의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성분의 변질 우려가 없는 시료는 택배로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 시험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라도 의뢰인이 검정·시험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제5호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수와 도지정 약수터 수질분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분석”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의뢰인이 검체 및 검정·시험을 취소하면 반환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사람이 원장이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전라북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로, “요구하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과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10호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관”을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으로, “관장”을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되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을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11호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전라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의회직 후보 또는 의회직으로 당선되어도 무효로 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원 또는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4. 합법적인 출판기념 등을 통한 자작 도서의 판매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는 신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12호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를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본문 중“의원”을“전라북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의회의 구성원으로써”를“전라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대변자로써”를 “대변자로서”로 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5호 본문 중 “기타”를“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을“「공직자윤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해외활동”을“국외활동”으로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1항 본문 중“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로 하고,“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본문 중“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13호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종류) 제2항 본문 중 “공문서에 한하여”를 “공문서에서만”로 하며,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조(규격) 본문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본문 중““별지서식””을“별지서식”으로 한다.

제6조(관리) 본문 중 “관계부서의 책임자”를 “부서의 공인관리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을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 부서의 공인관리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된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3914호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전라북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운 영 위 원 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관실·행정지원관실·안전정책관실”을 “감사관실·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관리실·대외소통국”을 “기획관리실·자치안전국·소방본부·대외협력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새만금환경녹지국”을 “환경녹지국·복지여성보건국·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여성보건국·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민생일자리본부”를 “농축수산식품국·경제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산국·농업기술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14-262호

해망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군산시장 문동신이 시행하는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의거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1. 사업명칭 :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군산시장 문동신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위치 :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2012. 12. ~ 2015. 08
5. 주택건설 사업개요 : “붙임”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서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승 인		□ 대지조성사업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전라북도(보)-2-1호				
상 호	군산시		등 록 번 호	401-83-00021	
대 표 자	문 동 신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원		대지면적(㎡)	22,523.00	
건축면적(㎡)	3,321.97		건 폐 율(%)	14.75	
연 면 적(㎡)	42,510.93		용 적 률(%)	128.09	
동수(주/부)	(5동/10동)		세 대 수	483세대	
주택형별	전용 24㎡ 148세대 전용 38㎡ 110세대 전용 46㎡ 110세대 전용 58㎡ 115세대		총사업비	48,200,000천원 (국민주택기금 13,400,000천원)	
착공예정일	2013. 07. 01.		사용검사 예 정 일	2015. 8. 19	
동고유번호	동 명 칭 및 번 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 명 칭 및 번 호	연면적(㎡)
101동	아파트	5,977.33	106동	경로당	112.81
			107동	경비실	22.6
102동	아파트	6,075.27	108동	관리사무소	179.91
			109동	근린생활시설	162.65
103동	아파트	5,725.44	110동	문고	75.73
			111동	보육시설	251.19
104동	아파트	5,696.64	112동	전기/발전기실	278.33
			113동	주민공동시설	429.54
105동	아파트	5,779.72	114동	지하주차장	11,649.19
			115동	펌프실	94.58
변경내역	※ 붙임참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2014년 10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사업계획 변경내용

□ 대지경계 및 사업부지 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경 후	비 고
사업 면적	22,620.00㎡	22,313.00㎡	증 693.00㎡
기부채납면적	790.00㎡	790.00㎡	변경 없음
대지 면적	21,830.00㎡	22,523.00㎡	증 693.00㎡

□ 실시설계에 따른 연면적 변경

○ 당초 38,918.68㎡ ⇒ 변경 42,510.93㎡(3,592.25㎡ 증가)

□ 지하주차장 면적 변경

○ 당초 8,208.03 ㎡ ⇒ 변경 11,649.19 ㎡ : 증 3,441.16㎡

□ 101동 ~ 103동 배치계획 변경

○ 대지경계 변경에 따른 주동배치 변경(단지배치도 및 인동거리 배치도 참조)

□ 조경면적 변경

○ 당초 8,066.66 ㎡ (36.95%) ⇒ 변경 8,668.11 ㎡(38.49%) 증 601.45㎡

□ 사업계획 변경 세부내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공통사항	대지면적(㎡)	21,830.00	22,523.00	기부채납 693
	건축면적(㎡)	3,323.32	3,321.97	감 1.35
	건폐율(%)	15.22	14.75	감 0.47
	연면적(㎡)	38,918.68	42,510.93	증 3,592.25
	용적률(%)	132.17	128.09	감 4.08
	세대수(호)	483	483	
	총사업비(천원) (국민주택기금)	48,200,000 (13,400,000)	48,200,000 (13,400,000)	-
	사업기간 (착공)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2012년 12월 ~ 2015년 8월	
기타사항	조경면적(㎡) (조경면적율)	8,066.66 (36.95%)	8,668.11 (38.49)	증 601.45 (감 1.54%)
	주차대수(대) - 지상 - 지하	485 - 지상 : 184 - 지하 : 301	485 - 지상 : 89 - 지하 : 396	- 지상 : 감 95 - 지하 : 증 95

전라북도 고시 제2014-263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전북 2014-21호	2014.10.24	(유)전흥 아콤코리아	정미숙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67-1 (서노송동)	나무병원	

전라북도 고시 제2014-264호

정읍시 고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인가 고시

정읍시 고부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하수도법」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기에 하수도법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인가 내용을 고시 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나. 성 명 : 정읍시장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지역의 생활하수 적정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327번지 일원
 나. 면 적 : 1,900㎡(하수처리장 1,875㎡, 펌프장 25㎡)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시설명 : 정읍시 고부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나. 예정하수발생량 : 80㎥/일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가. 예정배수구역 : 17.2ha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 17.2ha
6.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6. 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붙임 참조)
8. 기타 관계서류는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비고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합계							1,900					
1	정읍	고부	고부	374	구	7,514	51		국(농수산부)			하 수 처리장
2	정읍	고부	고부	327-9	도	3,166	803		전라북도			하 수 처리장
3	정읍	고부	고부	327	도	1,865	734		전라북도			하 수 처리장
4	정읍	고부	고부	327-5	답	45	6		정읍시			하 수 처리장
5	정읍	고부	고부	327-10	도	521	237		전라북도			하 수 처리장
6	정읍	고부	고부	328	도	2,184	44		전라북도			하 수 처리장
7	정읍	고부	장문	388	전	66	25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 제일비사벌아파트 104-602	이순이			펌프장

전라북도 고시 제2014-265호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1. 고 시 명 :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高敞 茂長 東學農民革命 起包地)

○ 지정종별 : 기념물 제129호
○ 소 재 지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 7,390㎡(16필지), 〈지형도면 붙임1 참조〉
○ 소 유 자 : 전라북도 고창군
○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지정사유
-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지는 한국근대사에서 스스로 전국에 걸쳐 사회개혁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의 하나로 상징성이 매우 큰 유적지으로 평가됨.

나. 문화재 명칭 : 남원 백련사 육조대사 법보단경
(南原 白蓮寺 六祖大師 法寶壇經)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27호
○ 소 재 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550
○ 수 량 : 1책
○ 소 유 자 : 백련사

○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 지정사유

-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중국 선종의 제6대 혜능 조사의 어록집으로 1574년(선조 7년) 안심광제원(安心廣濟院) 간행본으로 추정되며, 선종 불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음.

다. 문화재 명칭 : 남원 백련사 선종영가집 언해
(南原 白蓮寺 禪宗永嘉集 諺解)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28호

○ 소 재 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550

○ 수 량 : 1책

○ 소 유 자 : 백련사

○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 지정사유

- 선종영가집 언해는 당나라 영가 현각(永嘉 玄覺)이 찬술하였으며,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과문(修定科文)한 선종 불서임. 비록 상권 1책이 결본상태이며 권수(卷首)와 권말(卷末)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선 세조 년간(1417~1468)에 간행된 간경도감(刊經都監) 원본으로 동일한 판본인 보물 제774호 선종영가집 언해와 보물 제1163호 선종영가집 언해와 같이 조선전기 한글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라. 문화재 명칭 :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淳昌 日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29호

○ 소 재 지 :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2168-33

○ 수 량 : 불상 1구 및 복장유물

○ 소 유 자 : 일광사

○ 관리단체 : 전라북도 순창군

○ 지정사유

- 순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함풍 4년(1854)'에 개금(蓋金)하였다는 중수기의 기록으로 보아 그보다 앞선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옷주름이나 볼륨감 넘치는 신체 표현 등은 17세기 중엽 전라도와 충정도에 활약한 혜희(惠熙) 또는 혜희 유파의 작품으로 보임. 47㎝의

소형 불상이나 작품성이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마. 문화재 명칭 :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신중도
(高敞 禪雲寺 大雄寶殿 神衆圖)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30호
○ 소 재 지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05
○ 수 량 : 1점
○ 소 유 자 : 선운사
○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지정사유
-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신중도는 1807년(순조 7)에 수화승(首畵僧) 오봉(鰲峰) 등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화면 구성이 빼어나고 원만한 상호 및 인체 비례의 적정 등 인물 표현이 자연스럽고 색채 표현이 조화로운 수작(秀作)으로 평가됨.

바. 문화재 명칭 : 고창 선운사 석상암 산신도
(高敞 禪雲寺 石床庵 山神圖)

○ 지정종별 : 유형문화재 제231호
○ 소 재 지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05
○ 수 량 : 1점
○ 소 유 자 : 선운사
○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지정사유
- 고창 선운사 석상암 산신도는 1847년 정미년(丁未年)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색채가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필치와 호랑이의 움직임 자연스럽고 산신의 상호 표현이 뛰어난 수작(秀作)으로 평가됨.

사. 문화재 명칭 : 고창 선운사 석상암 칠성도
(高敞 禪雲寺 石床庵 七星圖)

○ 지정종별 : 문화재자료 제192호
○ 소 재 지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05
○ 소 유 자 : 선운사
○ 수 량 : 1점
○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지정사유

- 고창 선운사 석상암 칠성도는 19세기말 20세기에 호남지역에서 활용한 화승(畵僧) 금호 약효(錦湖 若效)와 그의 제자들의 화풍을 잘 보여주는 불화로 추정됨. 안정된 구도와 색의 조화, 섬세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불화로 화기(畵記)의 손상이 있어 정확한 제작년대를 알 수 없지만 조선 말기 불화조성 방법 및 안료의 성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됨.

3. 지정일자 : 도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및 관할 시·군 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 화 : 063-280-3314 / 전송 : 063-280-3319

나. 관할 시·군

○ 남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173 / 전송 063-620-6707

○ 순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650-1623 / 전송 063-650-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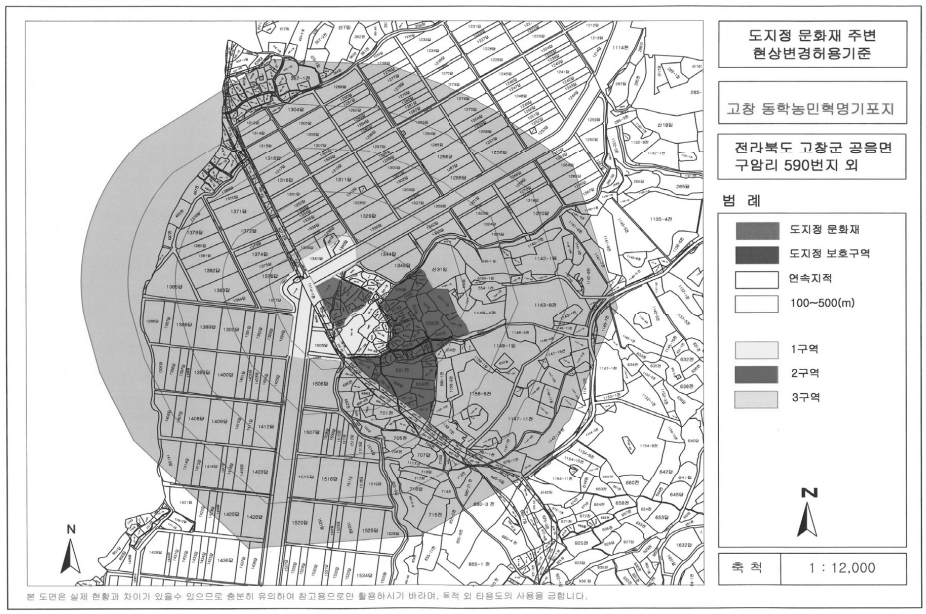
○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5 / 전송 063-560-2469

〈붙임 1〉

「고창 동학농민혁명기포지」 문화재구역 지번별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1114-7	하천	1,704	1,704	국(건설부)
2	〃	1114-11	하천	205	205	국(건설부)
3	〃	529-1	전	350	350	고창군
4	〃	1115-13	잡	313	313	국(기획재정부)
5	〃	592	전	172	172	고창군
6	〃	591	답	337	337	고창군
7	〃	590	답	436	436	고창군
8	〃	593	전	488	488	고창군
9	〃	594	전	726	726	고창군
10	〃	589	답	698	698	고창군
11	〃	589-2	답	148	148	최진옥
12	〃	589-3	답	132	132	최진옥
13	〃	596	전	302	302	고창군
14	〃	595	전	886	886	고창군
15	〃	588	전	321	321	고창군
16	〃	587	전	172	172	고창군

「고창 동학농민혁명기포지」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전라북도 공고 제2014-10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시행령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

1. 등록번호 : 제2014-1-전라북도-19
2. 단체명칭 : 희망드림
3.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조경단로 61
4. 대 표 자
 ○ 성 명 : 안 철 * (681016-1******)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24 현대@ 202/1407
5. 주된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 장애인 보장구 임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전라북도 공고 제2014-1023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순번	구분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용량 (kW)	설치위치	비고
1	양수인	(제2008-180호) 에스플랜트사호(주) (에스플랜트사호 태양광발전소)	이석근	1,000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92-7,692-8	· 인가일 -'14.10.23.
	양도인	(제2008-180호) (유)사율리태양광발전소	송종수			

전라북도 공고 제2014-102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구분 \ 상호	청솔건설(주)
등 록 번 호	전북140015
등록년월일	2014. 10. 27
자 본 금	1,420,000천원
대 표 자	배 진 석
영업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로 17

전라북도 공고 2014-10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시행령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1. 등록번호 : 제2014-1-전라북도-20
2. 단체명칭 : 다온복지센터
3.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6-23
4. 대 표 자
 ○ 성 명 : 김 미 * (650718-2******)
 ○ 주 소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성암길 458-16
5. 주된 사업
 ○ 장애인 야학운영
 ○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전라북도 공고 제2014-1028호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10월 31일

1. 허 가 번 호 : 2004-6450000-008-0003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
4. 대표자 인적사항
 - ○ 성 명 : 임 희 *
 - ○ 주민등록번호 : 670510-1******
 -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3길 13-2
5. 설립 목적
 - ○ 중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동료상담
 - ○ 활동보조인 파견 교육사업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 등
6. 변경 허가사항
 - ○ 제2조 2의 지부의 소재지 명확화
 - ○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1조, 회원의 권리의무 문구 통합 변경,
 - ○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정기총회 소집시기의 구체화하고 총회소집에 대한 회장의 소집 기피에 대한 강화와 총회의 권한 및 의결 정리, 삭제
 - ○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규정을 변경하고 사무처의 업무의 구체화 등
 - ○ 제35조, 제36조, 37조를 36조로, 제38조를 37조, 제6장을 11장으로 변경
7. 변경연월일 : 2014. 10. 2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 공고 제2014-1034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후보자 모집 공고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능력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장

2014년 10월 31일

1. 모집대상

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 1명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모자격 및 임기

가. 응모자격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원장)에 따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모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다. 임기 : 3년 (연임 가능)

3.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10.28.(화) 09:00 ~ 11.11.(화) 18:00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응급의료)/우편번호 560-761

4.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

5. 제출 서류

가. 응모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응모자격 충족 확인 서류(증명서) 1부
마. 전문의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석·박사) 사본 1부 (해당자만)
바. 건강검진 진단서 1부(최근)
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아. 기타 실적 등 증빙서류(필요시)
자. 병원경영목표 및 경영방향, 의료원 경영합리화 계획 1부
(①병원경영, ②노·사관계 개선, ③공공의료계획, ④병원발전,
⑤향후 3년간 연도별 진료계획 실행 방안 등의 구체적 세부계획 포함 제출)
차.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경력·자격 등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소정양식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blog_jeonbuk/index.jsp) 『실국홈페이지』,『보건의료과』,『자료실』과 남원의료원 홈페이지(http://www.namwonmed.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남원의료원 연혁 및 조직, 규모, 추진사업 등의 자료는 전라북도 홈페이지(소정양식 다운받은 순서와 같음) 및 남원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 063-280-2431)

붙임 신청서류 1부.

응 모 신 청 서

<table>
<tr><td>성 명</td><td>한글</td><td></td><td>한자</td><td></td><td>지 망
의료원</td><td>전라북도
남원의료원</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5">-</td><td rowspan="4">사 진</td></tr>
<tr><td>등록기준지(본적)</td><td colspan="5"></td></tr>
<tr><td>현 주 소</td><td colspan="5">(우편번호) -
시(도) 구(군) 동(면) 번지</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5">자택() - 사무실() -</td></tr>
<tr><td rowspan="3">학 력</td><td colspan="2">년 월</td><td colspan="4">고등학교 졸업</td></tr>
<tr><td colspan="2">년 월</td><td colspan="4">대학교 졸업</td></tr>
<tr><td colspan="2">년 월</td><td colspan="4">대학원(학위 :)</td></tr>
<tr><td>병력구분</td><td colspan="2">만기, 면제, 미필</td><td>군별 :</td><td>계급 :</td><td colspan="2">복무기간 : ~</td></tr>
<tr><td rowspan="3">자 격 및
면허취득</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경력사항</td><td colspan="2">근무기간</td><td>소 속</td><td>직 위</td><td colspan="2">면직사유</td></tr>
<tr><td colspan="2">. . ~ .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 ~ .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 ~ .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6">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본
3. 응모자격 충족 확인서류 4.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
5. 건강검진 진단서 6. 기타 실적 입증자료
7. 병원경영목표 및 경영방향, 의료원 경영합리화 계획 등</td></tr>
<tr><td colspan="7">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인)</td></tr>
</table>

이 력 서

사 진

□ **개인신상**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세)
	한자		주민번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계급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표시)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償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어학	종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자 기 소 개 서

주 소	
성 명	

※ 지원동기, 지원 의료원 운영실태 및 경영혁신방안에 대한 견해, 사회봉사 실적 등을 항목별로 구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A4용지 2매이내 제출 (병원 운영경력, 사회봉사실적 등 증빙할 수 있는 관계자료 첨부가능)

1. 지원동기

2.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견해

3.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견해

4.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견해

5. 기타 실적 < 사회봉사활동 포함 >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경 영 계 획 서 (참고)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①병원경영, ②노·사관계 개선, ③공공의료계획, ④병원발전, ⑤향후 3년간 연도별 진료계획에 대한 **각각의** 전략,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실행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작성을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및 글자 크기 : A4용지 10매 이내로 기술하되, 5개항목에 대하여 2매 정도 작성, 앞부분에 5개항을 2장으로 요약 첨부, 글자 크기 14포인트)

□ **비전**

○

○

○

□ **목표**

○

○

○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

○

○

□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작성**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응모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진위여부 검증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의료원장 임용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14-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익 산 소 방 서 장

2014년 10월 31일

▣ 공고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 ㈜세영이엔지 대표 장 경 식
2. 업종 및 등급 : 소방시설공사업(전문)
3. 등 록 번 호 : 전북익산 제2002-09호
4. 영 업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인북로6길 22(인화동1가)
5. 위 반 사 항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
6. 처 분 근 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7. 처 분 내 용 : 2차 - 영업정지 3개월
8. 영업정지 기간 : 2014. 10. 27 ~ 2015. 01. 26.

전북고창소방서 공고 제2014-01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도)보에 공고합니다.

고 창 소 방 서 장

2014년 10월 31일

▣ 공고사항

1. 등 록 번 호 : 전북 고창 제2014-01호
2. 업 체 명 : ㈜세종
3. 대 표 자 : 박 영 *
4. 영 업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들반계길 4
5. 업종 및 등급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등 록 일 자 : 2014. 10. 24.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14. 10. 27(월) 간부회의 시

관리번호	지 시 제 목	지 시 내 용	처 리 부 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65	위탁업무 관리 철저	○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대상, 성과평가관리, 정산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화할 것	기 획 관	전실·과
66	건의사항 관리 전담부서 업무분장	○지사님 면담,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바람	성과관리과	
	당면 · 현안업무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신규·증액사업은 해당 상임위에서 반드시 구두(서면)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실국에서는 총력을 기울일 것 ○인사이동으로 바뀐 본인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윤곽을 잡아 '15년 예산심사 등에 대응하고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실국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할 것) ○국가에서 주관하는 충무훈련에 최대한 협조하여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대응할 것 ○우리 도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활용할 것		

전주시 공고 제2014-1265호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전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로 및 주차장,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14년 10월 31일

□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비고
소로3-161호선	평화동1가 418-3 ~서서학동 373-11	L=226m B=6m	551	2014.11~ 2015.12.31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성명: 전주시장	장승백이 구역주거 환경개선 사업
소로3-1144호선	서서학동 361-26 ~서서학동 373-11	L=398m B=6m				
소로3-1105호선	서서학동 373-33 ~ 서서학동 370-12	L=54m B=6m				
소로3-1106호선	서서학동 370-9 ~ 서서학동 370-51	L=37m B=6m				
주차장86호	서서학동 370-3 일대	A=500㎡	121			
공원175호	서서학동 370-46 일대	A=324㎡	7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실음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실음 생략

□ 열 람 사 항
○ 열 람 기 간 :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 람 장 소 :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427),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83)
○ 열 람 내 용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
○ 의견서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군산시 공고 제2014-1578호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1494호(2014.10.15)로 공고한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안내 공고를 취소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0월 31일

정읍시 고시 제2014-93호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정읍시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14년 10월 31일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5	8	국지 도로	304	연지동 415	하모동 4-18	일반 도로	-	'87.4.22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45	8	국지 도로	304	연지동 415	하모동 4-18	일반 도로	-	'87.4.22	해제된 도로와 연결 가각부분 제척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9,500	고부면 장문리 440-3	북면 남산리 790	일반 도로	-	'09.3.24	도시지역 외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9,500	고부면 장문리 440-3	북면 남산리 790	일반 도로	-	'09.3.24	현 도로 실정에 맞게 선형 조정
기정	소로	2	42	6	국지 도로	3,900	감곡면 승방리 700-8	감곡면 삼평리 496	일반 도로	-	'09.3.24	도시지역 외
변경	소로	2	42	6	국지 도로	3,900	감곡면 승방리 700-8	감곡면 삼평리 496	일반 도로	-	'09.3.24	현 도로 실정에 맞게 선형 조정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 2-145	소로 2-145	• 가각처리부 일부 제척	• 2010년 해제된 도로와의 연결 가각부분을 제척하여 현 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함
변경	소로 2-34	소로 2-34	• 선형변경	• 현 도로 실정에 맞게 선형 조정
변경	소로 2-42	소로 2-42	• 선형변경	• 현 도로 실정에 맞게 선형 조정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정읍시 고시 제2014-94호

정읍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14년 10월 3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평동 63-7번지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정읍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진입로 개설공사(2차)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50m, B=10m(소로1-78호선)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 성 명 : 정읍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고시일로부터 ~ 2015. 8.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계					2079	480						
1	정읍	상평	63-7	전	333	1	100	김덕수				
2	〃	〃	63-1	체	739	400		정읍시				
3	〃	〃	916-10	체	240	57		국(건설부)				
4	〃	〃	203	체	710	11		정읍시				
5	〃	〃	203-1	체	53	9	599	김용술				
6	〃	〃	63-3	체	4	2		정읍시				

정읍시 공고 제2014-1104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공고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 및 시설관리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14년 10월 31일

1. 사업 시행지 :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비 고
공공공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	총면적: 103,067㎡	1단계 : 6,010㎡ 2단계 : 97,0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정읍시 충경로 234
 나. 성 명 : 정 읍 시 장
5. 사 업 비 : 총7,940백만원(1단계 4,800백만원, 2단계 3,140백만원)
6.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1단계 실시계획인가일~2017.12.31, 2단계 실시계획인가일~2019.12.31)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 따로 붙임
8. 열람장소 : 정읍시 도시과(☎063-539-5782),시설관리사업소(☎063-539-5254)
9. 열람기간 : 도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10. 의견제출 : 관계도서 열람후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면	리	지번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소성	주천	1	잡	14,383	14,383	국방부	-	-	-	-	
2	소성	주천	5-5	잡	1,751	1,643	국방부	-	-	-	-	
3	소성	주천	5-11	잡	233	2	국방부	-	-	-	-	
4	소성	주천	5-19	잡	108	107	국방부	-	-	-	-	
5	소성	주천	5-20	잡	10	1	국방부	-	-	-	-	
6	소성	주천	5-21	잡	42	35	국방부	-	-	-	-	
7	소성	주천	10-1	잡	155	155	국방부	-	-	-	-	
8	소성	주천	11-1	임	403	403	국방부	-	-	-	-	
9	소성	주천	15-3	잡	123	123	국방부	-	-	-	-	
10	소성	주천	15-5	잡	26	26	국방부	-	-	-	-	
11	소성	주천	16-2	잡	588	588	국방부	-	-	-	-	
12	소성	주천	16-6	잡	7	7	국방부	-	-	-	-	
13	소성	주천	16-9	잡	37,845	37,845	국방부	-	-	-	-	
14	소성	주천	16-10	임	6,623	6,623	국방부	-	-	-	-	
15	소성	주천	16-11	잡	524	524	국방부	-	-	-	-	
16	소성	주천	16-12	임	17,546	17,546	국방부	-	-	-	-	
17	소성	주천	16-13	잡	5,551	5,551	국방부	-	-	-	-	
18	소성	주천	16-14	잡	3,463	3,463	국방부	-	-	-	-	
19	소성	주천	16-15	잡	13,276	13,276	국방부	-	-	-	-	
20	소성	주천	16-16	잡	420	420	국방부	-	-	-	-	
21	소성	주천	699-1	도	313	313	국토해양부	-	-	-	-	
22	소성	주천	산2-12	도	33	33	국방부	-	-	-	-	
합 계					103,423	103,067						

김제시 고시 제2014-112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91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14년 10월 31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유수지	저류시설	김제시 신풍동 63-2번지 일원	-	증) 7,779	7,779	금회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저류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유수지 (저류시설)	신설 : 7,779㎡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을 위한 유수지 신설

2.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순창군 고시 제2014-84호

순창군 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순 창 군 수

2014년 10월 3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47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
 나. 명 칭 :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3.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4,732㎡
 나. 시설사업면적 : 4,732㎡
 ○ 건축면적 945.98㎡(건폐율 20.42%), 연면적 1667.16㎡(용적율 32.6%), 높이 10m(지하1층, 지상2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순창군수,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5. 시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후 ~ 2015.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번호	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1	순창읍 남계리	471	대	4,732	4,732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